

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록

사무국장	부단장	부단장	부단장	부단장	수석부단장	포교사단장		
(	(	(	(	(	(	115/10/03		
회 의	온라인 전자투표 실시							
기 간	5. 13(수) ~ 5. 18(월)			소집자	포교사단장			
투표참석	대의원 총453명, 의결권자(감사제외) 426명 중 363명 투표 (85.2%)							
제 목	2020년도 포교사단 정기대의원총회 결과보고							

- ▶ 보고사항 : 회의자료 내용 보고 (첨부 회의자료 참조)
- ▶ 의결사항

■ 안건 1 : 2019년 사업결산 승인

- 제안사항 : 2019년 포교사단 사업결과와 결산내역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결의사항 ()
찬성 353(97.2%) 반대 7(2%) 무응답 3(0.8%)

■ 안건 2 : 정관 제15조(임원) 4호 전문운영위원 삭제 건

- 제안사항 : 포교사단 제1차 운영위원회의(1.11) 결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포교사단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제목 : 전문운영위원을 본단 임원에서 삭제 (본단 운영위원으로 변경)
- 나. 개정안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정관 제15조(임원) 본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단장 1인 2. 수석부단장 1인 3. 부단장 4인 이내와 지역단 장 4. 전문운영위원 5. 감사 2인(단, 감사는 의결권 이 없다) 	<p>정관 제15조(임원) 본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단장 1인 2. 수석부단장 1인 3. 부단장 4인 이내와 지역단 장 4. 감사 2인(단, 감사는 의결권 이 없다) 	<p>4.전문운영위원 <u>삭제</u></p>

- 결의사항 : **가결**

찬성 344(94.8%) 반대 17(4.7%) 무응답 2(0.5%)

■ 안건 3 : 정관 제26조(운영위원회 구성) 추가 신설 건

- 제안사항 : 포교사단 제1차 운영위원회의(1.11) 결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포교사단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목 :

- 1) 정관 제26조(운영위원회 구성) 3호 '전문운영위원' 추가 신설
- 2) 정관 제26조(운영위원회 구성) 4호 '본단 직할팀장' 추가 신설

나. 내용 :

- 1) 전문운영위원건 : 전문운영위원의 직책을 본단 임원에서 본단 운영위원으로 변경하고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를 전문운영위원으로 기용 활동 시켜 사업의 효율과 조직의 발전을 꾀하고자 함.
- 2) 직활팀장건 : 본단 직활팀장의 소속이 현행 정관 및 규정에서 본단 및 지역단의 운영위원회의 어디에도 배정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여 본단직활팀의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본단 직활팀장을 본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신설 시키고자 본단 운영위원회의에 관한 정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.

3) 개정안 :

현 행	개 정	비 고
정관 제26조(구성) 본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 ·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 는 운영위원회를 둔다. 1. 제15조의 임원 2. 각 지역단 대표 2인(지 역단부단장)	정관 제26조(구성) 본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 ·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 는 운영위원회를 둔다. 1. 제15조의 임원 2. 각 지역단 대표 2인(지 역단 부단장) 3. <u>전문운영위원</u> 4. <u>본단 직활팀장</u>	
		추가 신설 추가 신설

- 결의사항 : **가결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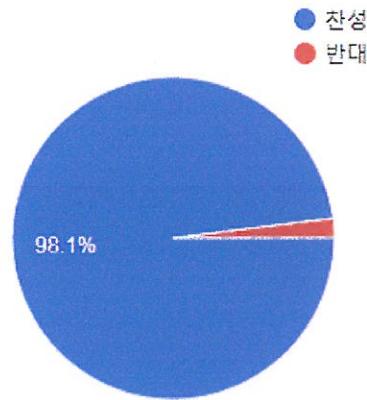
찬성 318(87.6%) 반대 41(11.3%) 무응답 4(1.1%)

안건별 도표

질문 응답 36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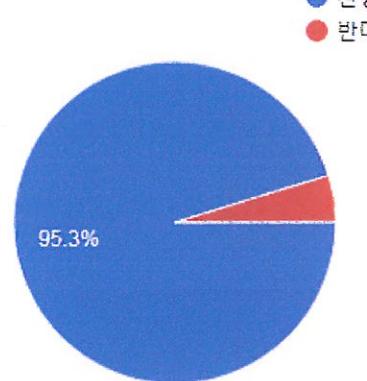
안건 1. 2019년 결산 승인

응답 360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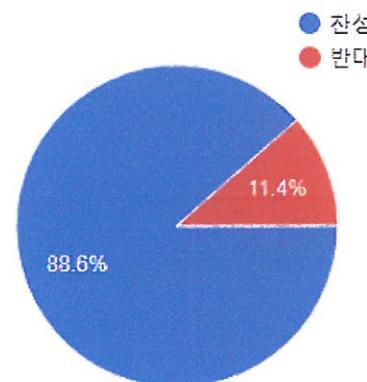
안건2. 정관 제15조(임원) 4호 전문운영위원회 삭제 건

응답 361개



안건3. 정관 제26조(운영위원회 구성) 추가 신설 건

응답 359개



※ 도표의 비율은 항목별 무응답자를 제외한 실제 응답자(안건1의 경우 360명) 대비 찬성, 반대 비율임. 결의사항의 비율은 무응답자를 포함한(363명) 비율이므로 도표와 차이가 납니다.